

국무총리기획조정실



국무총리지시 제 /ㄷ 호 (70-2041) 1977. 11. 11.

수신 내무부장관
서울특별시청

참조 지방국장

제목 청소년대책지방위원회 설치지침 시달

제 1차 청소년대책위원회 (1977.11.9) 에서 심의 의결한
청소년대책지방위원회 설치지침을 별첨과 같이 시달하니 시행에 만
전을 기하기 바랍니다.

첨부 : 국무총리지시 제 /ㄷ 호 1부. 끝

국 무 총 리

국무총리지시 제 120호

청소년대책지방위원회 설치 지침

청소년대책위원회 규정 제 10조 (지방위원회의 설치)에 의하여 설치하는 청소년대책지방위원회의 구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.

다 음

1. 설치 및 구성 :

서울특별시, 부산시, 도와 시.군.구에 청소년의 선도 및 보호 대책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대책지방위원회를 설치한다

<시.도 지방위원회>

- 가. 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두되 위원장은 시장, 도지사가 되고, 부위원장은 각시.도 교육위원회 교육감과 부경찰국장이 된다.
- 나. 위원은 청소년대책위원회 규정 (대통령령 8670호) 제 3조를 참조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- 다. 경찰국장, 시.도의 관계공무원 (3급이상), 지방소년원장, 농촌진흥원장, 노동청지방사무소장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공무원을 당연직위원으로 한다
- 타. 비당연직위원은 KBS지방방송국장 및 청소년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회인사중에서 위원장이 지역실정에 맞도록 위촉한다.
- 마.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/

< 시.군.구 지방위원회 >

- 가. 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두되 위원장은 시장, 군수,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.군.구교육위원회 관할교육장 (또는 교육구청장) 과 겸찰서장으로 한다
- 나. 위원은 청소년대책위원회 규정 (대통령령 8670호) 제 3조를 참조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
- 다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공무원을 당연직위원으로 한다
- 타. 비당연직위원은 청소년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회인사중에서 위원장이 지역실정에 맞도록 위촉한다
- 마.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한다

직위원으로 한다

- 타. 비당연치 위원은 청소년문제에 관하여 학식·경험이 풍부한 사회인사중에서 위원장이 지역실정에 맞도록 위촉한다
- 마.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한다

< 관 사 >

- 가. 각급 지방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사 약간인을 둔다
- 나. 관사는 각급 위원장이 소속 일반직공무원과 경찰공무원중에서 각각 지명하는 자가 된다

< 청소년대책위원회와의 관계 >

- 가. 청소년대책지방위원회는 청소년대책위원회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시 또는 협조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
- 나. 청소년대책지방위원회는 청소년대책위원회에 청소년대책 업무에 관한 건의를 할수 있다.

2. 기 능

각급 지방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

- 가. 청소년의 지도, 보호육성에 관한 지역별 기본 계획과 종합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
- 나. 청소년행정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에 관한 사항

다. 청소년의 보호 및 복리시설의 설치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
라. 청소년의 인격도야 및 심신단련과 리간 청소년단체의 지도
및 육성에 관한 사항

마. 기타 청소년선도 및 보호에 관한 사항

3. 기타행정사항

가. 내무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은 본 지침에 의거 청소년대책
각급 지방위원회 설치에 관한 세부 지침을 작성하여 각시.
도 및 시.군.구에 시달한다

나. 각급 지방위원회위원장은 전항의 세부 지침에 의거 지방
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무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은 그 결과
를 종합 정리하여 청소년대책위원회에 보고한다

다. 내무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은 청소년대책지방위원회의
운영상황을 매분기별로 그 분기가 끝난후 30일 이내에 평
가하여 청소년대책위원회에 보고한다